



## 중국 회사법

21

- ◆ 중국 회사법 - 공사법(公司法)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2 종류만 인정
- ◆ 외국인투자기업법: 중외합자경영기업법, 중외합작경영기업법, 외자기업법
- ◆ 합자기업: 외국인과 중국인 공동투자로 중국 내 설립 + 공동경영, 공동수익, 공동위험부담의 유한책임회사 원칙 + 주식형 합자기업도 가능
- ◆ 합작기업: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과 중국기업이나 경제조직 사이 계약식 합영기업 + 출자자 사이의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관계가 결정되는 기업형식 + 출자자 자유의사에 의한 유한책임 + 계약중요
- ◆ 외자기업: 외국자본만으로 중국 내 설립한 기업
- ◆ 그 밖의 기업형태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법

## 외국인투자 중국 회사법인 형태 – 합자기업

22

- ◆ **중외합자기업 (Equity Joint Venture)**
- ◆ 유한회사 원칙 + 투자금액에 따라 지분비율 결정 +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배당 및 손실 부담 결정
- ◆ 최고 의사결정기구 – 동사회(이사회), 주주총회가 아니라는 사실 유의! 동사회 구성 핵심!
- ◆ 회사의 법정대표자 – 동사장(이사회 의장), 회사의 업무집행기구 – 총경리
- ◆ 총경리 권한 (합자조례 제36조)
  - ◆ 이사회 의결의 집행과 기업의 일상 경영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하부조직의 구성과 지휘
  - ◆ 이사회 의결 범위 내에서 대외적으로 합자기업을 대표
  - ◆ 이사회 의결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하부직원의 임면
  - ◆ 이사회에서 수여한 기타 직권의 행사
- ◆ 총경리 의무
  - ◆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
  - ◆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
  - ◆ 경업금지원칙 준수

## 외국인투자 중국회사 법인 형태 – 합작기업

23

- ◆ **중외합작기업 (Cooperative Joint Venture, Contractual Joint Venture)**
- ◆ 투자금액 및 지분비율의 제한 없이,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투자자들 사이의 협의 및 계약을 통해 기업의 거의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회사법인 형태
- ◆ 계약식 합영기업, 계약으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음
  - ◆ 이사회, 총경리 – 필수적 기구 아님
  - ◆ 연합관리위원회 구성 대체 가능
- ◆ 유한회사, 최고이사결정기구 동사회(이사회), 회사의 법정대표자 – 동사장(이사회 의장), 회사의 업무집행기구 – 총경리
- ◆ 정관변경, 자본금 증감, 분할, 합병, 해산 – 동사회 만장일치 의결 사항

## 중국 민법 특징

24

- 민법통칙 - 일반 소멸시효: 2년, 권리침해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2년 기산, 소송시효에 해당
- 물권법 - 토지공유제 기본 + 사적 지배권 인정 + 이용권 인정 등 특유제도 유념 + 공장 및 사무실 임대차 등에 중국법률전문가 조언 및 확인 필요
- 계약법(합동법) 중 계약무효 사유 중요: 법률 및 행정법규상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계약
- 대외민사관계 법률 적용법 (적용법) - 2010년 제정 특별법
  - ◆ 외국과 관련된 민사관계에 우선 적용
  - ◆ 일방 당사자가 외국인, 외국법인인 경우 or 목적물이 외국영토에 있는 경우 or 권리발생, 변경, 소멸의 법률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모두 적용대상
  - ◆ 계약으로 적용여부 선택가능 but 계약내용이 중국의 강행법규 회피목적인 경우 무효
  - ◆ 제51조: 민법 등 법규정 충돌시 적용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 천명

중국법무, 국제계약, 계약분쟁, 지재권분쟁, 손해배상, Claim, License, R&D 제휴계약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